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23755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손성락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11. 30.(피고 C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B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5,39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2. 11. 1.까지는 연 7.21%의,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인규

별지